
2015년 민방위 소집훈련 지침



성 동 구

민방위대원의 신조

1. 우리는

곧게뿜쳐 내마을 내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1.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 한다

1.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2015년도 민방위대 소집 훈련 계획

1. 목 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훈련]

- 1) 민방위대원 : 응소 인식 확산
- 2) 민방위대장 : 지휘 실습 기회
- 3) 담당공무원 : 절차 훈련 기회

2. 방 칩

- 1) 지역대는 동장 책임 하에 직장대는 직장장 책임 하에 실시
- 2) 편성제대별 임무 및 역할 중심의 실질적 소집 훈련 실시
- 3) 실효성있는 소집훈련을 위하여 적정인원 소집, 비상소집 점검훈련과 민방 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을 1시간 이내 실시
- 4) 학교강당, 구청, 동 주민센터 등 실내소집을 원칙으로 적정장소 선정
- 5)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의 비상소집훈련에 응소 가능

3. 훈 련 개 요

- 1) 훈련기간 : 2015. 3. 23(월) ~ 10. 30(금)
 - 지역민방위대 시범 : 2015. 3. 12(목) - 금호1가동

구 분	반 기	훈 련 기 간	훈 련 종 류	비 고
지역대	상반기	2015.03.23 ~ 04.03	기본 소집훈련 (2회로 나누어 실시)	동장 주관
		2015.04.13 ~ 04.24		
	하반기	2015.09.14 ~ 09.25	보충1차 훈련	
		2015.10.19 ~ 10.30	보충2차 훈련	
직장대	상반기	2015.03.23 ~ 04.03	기본 소집훈련	직장장 주관
	하반기	2015.09.14 ~ 09.25	보충 훈련	

※ 동별 필요시 추가 교육 실시 가능

- 2) 훈련대상 : 5년차 이상 만40세까지 민방위대원
(편성1-4년차 교육인원 제외)
- 3) 훈련중점
 - 비상소집 점검 훈련
 -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 재난대비 교육
- 4) 훈련방법
 - 1개동을 선정하여 사전에 시범훈련 실시
 - 『민방위대 소집훈련 표준화 지침』에 의거 훈련실시
 - 훈련시 민방위복 필히 착용
 - 야간·주말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지역대 자체 보충교육시)

4. 세부훈련계획

가. 지역 민방위대원 소집 시범훈련

- 1) 일 시 : 2015. 3. 12(목) 07:00 ~ 08:00
- 2) 대 상 : 금호1가동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3) 장 소 : 금북초등학교
- 4) 방법 및 내용 : 『민방위대 소집훈련 표준화 지침』 의거 실시
- 5) 참 관
 - 區 간부, 민방위 훈련 관계자
 - 관내 동장 및 동 민방위 담당

나. 지역 민방위대원 소집 훈련

- 1) 훈련 주관 : 동장, 통대장
 -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 기간 내 장소 및 일정 결정
- 2) 훈련일정 및 응소시간
 - 기 본 훈 련 : 2015.3.23(월) ~ 4.3(금)/ 4.13(월) ~ 4.24(금) 07:00~08:00
 - 1차 보충훈련 : 2015.9.14(월) ~ 9.25(금)
 - 2차 보충훈련 : 2015.10.19(월) ~ 10.30(금)

3) 훈련대상 : 편성 5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4) 훈련장소 : 동별 지정 장소(실내)

※ 가능한 학교 강당 등 협조요망(구청 인근동은 구청강당 적극 활용)

5) 소양교육

○ 교 관 : 동장 또는 담당자(기본, 1-2차 보충훈련)

○ 교육시간 : 07:00~08:00

○ 교육내용

▶ 편성제대별 임무 · 역할 및 재난대비 교육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6) 훈련소집 통지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사전에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훈련 통지서를 통대장이 대원에게 훈련 7일전까지 필히 전달하고 필요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통보(훈련장 위치 등 안내사항 확인)

7) 훈련제외 및 자체교육 인정자

○ 비상소집 훈련제외자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자(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 자체교육 인정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다. 직장 민방위대원 소집 훈련

1) 훈련일자 및 시간

○ 기본훈련 : 2015.3.23(월) - 4.3(금) 07:00~08:00

○ 보충훈련 : 2015.9.14(월) - 9.25(금)

2) 훈련대상 : 편성 1~4년차를 제외한 전 직장민방위대원

3) 훈련장소 : 직장대장 지정장소(민방위 대피소, 강당, 회의실 등)

4) 소양교육

○ 교 관 : 직장장

○ 교육 과목

▶ 편성 및 임무확인

▶ 재난대비 교육

5) 훈련소집통지

○ 기본훈련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공문, 회보, 구내방송, 비상연락망

○ 1,2차 보충훈련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수령증 보관)

※ 훈련 전 비상소집 통지서를 교부하고 구내방송을 이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훈련당일 당직근무자가 06:30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통보

6) 서울협업창구를 통한 소집훈련 결과 입력

7) 훈련제외 및 자체교육인정 - 지역대 사항과 동일 적용

라. 준수 사항

1) 훈련통제 요원 및 각급 민방위대장은 소집훈련 장소에 30분 전에 도착하여 훈련장을 준비하여 응소대원을 안내 실시

○ 통제관, 통대장은 민방위복(모자)착용 및 통제관 완장 착용

○ 응소하는 대원은 간소복 또는 민방위복 착용

2) 소집 훈련장소에는 훈련통제 및 소양교육을 위한 앰프방송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철저

3) 소집훈련장 교통 통제 및 사고발생 미연에 방지

마. 훈련지도 감독

1) 구청공무원(과, 팀장)급 간부를 동 단위 훈련통제관으로 편성

○ 훈련계획, 응소상황 점검실태, 신분확인, 교육실시여부 등

○ 민방위대장을 비롯한 간부요원 참석 여부 등

2) 동 공무원을 훈련장소에 배치하여 대원지도 및 안내

바. 민방위 자율참여

1) 활동분야

○ 민방공 대피훈련 등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자

○ 물놀이, 지역축제 등 재난예방 안전활동

○ 사태예방 및 수습(대설, 풍수해 등 수습활동 지원)

2) 자율참여자: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5. 행정 사항

1. 각 동장 및 직장장은 훈련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보고는 아래사항을 지켜(실시 전, 후)보고

※ 조기 응소자 대책을 포함한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2. 훈련계획 보고 : 2015. 2. 3(화)까지

○ 소집훈련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기한 내에 보고

3. 소집훈련장면을 사진 촬영하여(3개 장면 이상) 훈련 종료 후 제출

- 붙 임
1. 소집훈련 표준화 지침
 2. 교육 훈련 통지서
 3.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

【붙임 1】

소집훈련 표준화 지침

1. 훈련장 준비

가. 담당공무원은 06:00까지 훈련장에 도착하여 훈련준비

- 동 담당은 반드시 사회자카드를 작성 휴대하여 활용
- 훈련통제요원 및 각 민방위대장은 민방위복에 통제관 완장을 착용하고 사전에 배치하여 훈련준비 및 응소대원 안내
- 훈련장주변의 차량정리 및 안내요원 배치
- 앰프방송시설을 설치하여 후미까지 잘 들리도록 운영
 - ※ 훈련도중 안전사고를 대비한 대책강구

나. 훈련장소 준비

- 악천후시에도 소집훈련이 가능한 실내 장소
- 대로변에서 떨어져서 차량소음 등이 없고 훈련대상 전원응소가 가능한 적정 장소 선정

2. 훈련 통제

가. 응소대원 신분확인(훈련장 입구)

1) 지역 민방위대

- 응소장 입구에서 신분 확인
 - ▶ 기본/보충훈련시 비상소집훈련 통지서에 날인
- 대리참석 절대 불가 : 귀가 조치(부녀자 포함)

2) 직장 민방위대

- 응소장 입구에서 신분확인
 - ▶ 기본/보충훈련시 응소대원 명부에 자필기재 또는 소집훈련 통지서에 날인
- 대리참석자 귀가조치

나. 응소대원 정렬

1) 지역 민방위대

- 기본 및 1차 보충훈련 시에는 통대별로 정렬
- 2차 보충훈련 통합 정렬

※ 선두는 통대 표지판 또는 통대깃발을 휴대하고 반드시 후미 열에는 동
공무원이 질서 유지가 되도록 유도

※ 인원보고는 기본, 1·2차 보충 시는 통 대장이 동장에게

2) 직장 민방위대

- 기본훈련 시에는 분, 소대별로 정렬
- 보충훈련 시는 통합정렬

3. 국 민 의 례(기본,보충 교육시 반드시 실시)

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

나. 민방위대원의 신조 제창

- 신조 제창시 지휘 통대장이 선창하고 대원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로
마지막 끝 소절만 힘차게 복창

4. 소 양 교 육

가. 교육시간 : 1시간 이내

나. 교육내용 : 민방위대 편성제대별 임무·역할 및 재난대비 교육 등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는 반드시 교육 요망

다. 통 민방위대

- 동 장 : 기본 및 1,2차 보충 훈련 시

라. 직장 민방위대

- 기본 및 보충훈련 시 직장민방위대장 간부

5. 훈 련 종 료

가. 지역 민방위대

- 훈련안내문, 교육훈련 통지서 회수
- 정확한 응소대원수 파악정리

- 운동장에 쓰레기 등 오물자진수거 유도

나. 직장 민방위대

- 훈련안내문, 교육훈련 통지서 또는 출석부 회수
- 정확한 응소대원수 파악정리

6. 악천후 시 훈련요령(우천, 폭설, 혹한 등)

가. 지역 민방위대

- 동장이 응소대원을 확인하고 귀가조치
- 훈련안내문, 교육훈련 통지서 회수
- 유인물(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배부로 대체

나. 직장 민방위대

- 기본훈련 시는 정상훈련 실시(실내 소양교육장 준비)
- 훈련안내문, 교육훈련 통지서 회수
- 정확한 응소대원수 파악정리

7. 지각 응소자 및 현지훈련 참가자 조치요령

가. 소집훈련 응소시간 이후 도착한 대원은 재교육 실시: 교육 참여 불가

나.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훈련 응소 가능

- 현지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서울행정시스템에 입력
- 서울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공문 병행 통보

[붙임 2] 교육훈련 통지서

[별지 제21호 서식]

(앞 쪽)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훈련 참가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교육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년 월 일		소집기간 (우천시)	~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장대장 ① (구청장)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번호				
				년 월 일 동장, 직장대장 ① (구청장)				

(뒤 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니다.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면·동사무소(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위치도, 교통편 * 현지교육 안내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명시
---	---

【붙임 3】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예시)

연번	소속	성명	주민번호	주소	교육(응소) 일 시	응소자 서명* (비상소집 훈련시)	비고

확인자 : 소속 민방위대장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 지역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연락처, 등기우편전자문서 발송 등의 서명날인 등 추가 활용)
* 동란은 비상소집훈련용으로 활용